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017~6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17.3.28.시행)함에 따라,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소액 군세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
-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이관(종전 조례 제7조 ⇒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4. 16.~5.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 현황
 - 입법예고: (6개시)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 (5개군) 하동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거창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거창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